

대구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가단1325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노승진,윤성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유신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2. 6. 접수 제214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채권의 양도

주식회사 D는 C에 대하여 “C은 주식회사 D에게 39,158,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5.부터 2012.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만 한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 D는 2020.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2018. 2. 6.경 C과 C 소유의 대구광역시 남구 E 외 1필지 F아파트 G동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제1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서증을 언급할 때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의 채권자의 권리를 해함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에게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1) 피고와 C은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C의 채무부담은 원고를 해할 만큼의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주식회사 I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 3)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그 소유명의를 C 명의로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J기관의 신용정보조회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C이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 인식이 있었던 사실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불과 2-3개월 이전인 2017. 12. 11. C과 함께 각각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고와 C 사이에 이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혼인관계도 지속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은 재산분할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래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존의 근저당설정등기 상의 피담보채무액 미초과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설정이 되었고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30,000,000원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의 가액이 위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명의신탁주장에 대한 판단

을제1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등만으로 C 소유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 피고의 특유재산인 사실과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중화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남구 ,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74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구광역시 남구

대 6578.1㎡

2.

대 3030.5㎡

대지권의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9,608.6분의 53.2416

중 갑구2번 지분 전부

